

「2026년 가을 바로마켓 가평점 직거래장터 기초구성 임차용역」

과업지시서

2026. 8.

가평군시설관리공단
[혁신기획팀]

I 과업 개요

1. 과업명: 2026년 가을 바로마켓 가평점 기초구성 임차 용역
2. 과업목적: 자라섬 꽃 페스타 방문객에게 가평군의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농·특산물을 판매 및 홍보하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기초구성 임차
3. 과업기간: 착수일 ~ 2026. 10. 7.(수)까지
가. 설치완료: 2026. 9. 7.(월)까지
나. 운영기간: 2026. 9. 9.(수) ~ 2026. 10. 5.(월)
다. 철거완료: 2026. 10. 7.(수)까지
4. 과업범위
가. 몽골텐트, 테이블, 의자 등 행사부스 설치·구성
나. 행사부스 간 햇빛·비가림을 위한 타프 설치(타프 설치 위 차광막 추가 설치)
다.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사부스 상태 유지
라. 직사광선 차단 및 진열상품 보호를 위한 몽골텐트 내부 차광막 설치
마. 행사종료 후 행사부스 철거 및 주변을 정돈된 상태로 회복
바. 기타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름
5. 계약방법: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(견적경쟁 방식의 입찰형 수의계약)
※ 참여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낙찰하한율에 따른 유효 견적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낙찰자 선정
6. 과업장소(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자라섬 중도 일원)
※ 상세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(감독관)이 지정하는 위치로 한다.



II 근거 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나. 「전기사업법」·「전기안전관리법」 등 임시전기설비 안전 관계 법령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설치·철거 작업 안전 관계 법령

III 과업의 세부내용

1. 과업 일반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(설치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완료 전까지) 착수계 및 설치·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임차 대상 물품 설치 전·중·후 현장사진과 인력투입 사진을 제출하고, 철거 후 현장 복구 확인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는 행사부스 설치와 철거 시에 최소 각 5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설치 및 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몽골텐트를 포함한 모든 임대 대상물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물품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조치해야 한다.
- 마. 임대 대상 물품 목록표는 다음과 같으며, 구체적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.

<임대 대상 물품 목록표>

구 분	분 류	규 격	수 량	용 도
행사부스 구성	몽골텐트	5M × 5M	31동	
	듀라테이블	1.8M × 0.76M	120개	
	플라스틱의자	-	120개	
	통로 차광막	5M × 5M	15	
	내부 농가 차광막		25개	

	타프	5M × 5M	15개	
기타 부속물품	우드메탈 테이블 세트	테이블1개+의자4개	6세트	고객 쉽터용
	대형선풍기	-	26개	행사 운영용 (세척된 제품 이물질 없는 상태)
	수직냉장고	-	26개	
	칼라 복합기	-	1개	상시 출력가능·소모품 교체
	노트북	-	1개	

2. 과업 수행내용

가. 행사부스(몽골텐트, 타프, 듀라테이블, 플라스틱 의자) 설치

- 1) 행사부스 구성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물품의 구체적인 사양(색상, 소재 등)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물품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방문객의 안전과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사부스를 설치해야 하며, 설치완료 후에 안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치 장소를 변경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타프 천막과 천막사이 중간 보행자 통행로에 타프 및 차광막(규격: 5M*5M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수행자는 몽골텐트 내부 천장부위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5) 과업수행자는 행사부스가 강풍과 우천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, 텐트를 고정하는 끈이나 케이블타이 등이 이탈되었을 경우,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.
- 6) 행사운영 중 행사부스에 이상이 있을 경우,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해야 한다.
- 7) 행사종료 후 모든 장비와 부속품을 안전하게 철거하고, 주변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.

나. 기타 부속물품 설치

- 1) 기타 부속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물품의 구체적인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물품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한다.
- 2) 기타 부속물품 중 노트북은 기본 OS(한글과컴퓨터, Microsoft Office 등)이 구동 가능하여야 하며, 칼라 복합기는 상시 출력 가능한 상태 및 소모품(토너, 드럼, 카트리지 등) 소진 시 교체하여야 한다.

3. 안전 및 전기설비

- 가. 몽골텐트·타프 등은 강풍에 의한 전도·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, 기상특보(강풍·호우 등) 발효 시 보강 또는 철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나. 냉장고·선풍기 등 전기기기 사용을 위한 임시전기설비는 누전차단기·접지·방수 조치 등 감전·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인·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요청 시 증빙을 제출한다.

4.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

- 가.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기간은 행사(용역)기간으로 하며,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과업 범위 일체의 시설 및 물품에 대해 A/S 처리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범위 내에서 A/S 요청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상으로 처리한다.
- 다. 용역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의 파손·변형 시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.

IV 납품·검수 및 지체상금

1. 설치기한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자로 하며,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2. 계약금액에는 임차료·설치·운반·정리·A/S 등 모든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.
3.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
V 계약의 해지조건

1. 임차 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사에 차질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2.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에 대한 제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VI 계약의 특수사항

1. 특수사항

- 가. 계약금액에는 설치·운반·정리·A/S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.
- 나. 행사 현장 내 타 용역과의 업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행사 종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라.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(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, 천재지변 등)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